

컨테이너형식승인 및 컨테이너지정시험기관의 취소와 효력정지 처분의
기준(제62조의3제1항 관련)

1. 일반기준

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·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효력정지 기간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기간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. 다만, 늘리는 경우에도 그 효력정지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.

2. 개별기준

가. 컨테이너형식승인에 대한 처분기준

위반행위	근거 법조문	행정처분 기준
1)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컨테이너형식승인 또는 그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	법 제23조의3제1항제1호	형식승인 취소
2) 컨테이너검정을 받지 않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컨테이너검정을 받은 경우	법 제23조의3제1항제2호	효력정지 6개월
3) 컨테이너형식승인의 변경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	법 제23조의3제1항제3호	효력정지 2개월
4) 정당한 사유 없이 컨테이너형식승인 또는 그 변경승인을 받은 후 2년 이상 계속하여 컨테이너를 제조하지 않은 경우	법 제23조의3제1항제4호	효력정지 6개월
5)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컨테이너형식승인을 받은 컨테이너가 같은 조 제10항에 따른 형식승인시험의 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	법 제23조의3제1항제5호	효력정지 6개월
6)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75조에 따른 보고·자료제출명령을 거부한 경우	법 제23조의3제1항제6호	효력정지 2개월

나. 컨테이너지정시험기관에 대한 처분기준

위반행위	근거 법조문	행정처분 기준
1)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	법 제23조의3제2항제	지정취소

정을 받은 경우	1호	
2) 형식승인시험에 관한 업무를 더 이상 수행하지 않는 경우	법 제23조의3제2항제 2호	지정취소
3) 컨테이너지정시험기관의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	법 제23조의3제2항제 3호	지정취소
4) 형식승인시험의 오차·실수·누락 등으로 인하여 공신력을 상실했다고 인정되는 경우	법 제23조의3제2항제 4호	효력정지 6개월
5) 정당한 사유 없이 형식승인시험의 실시를 거부한 경우	법 제23조의3제2항제 5호	효력정지 3개월
6) 형식승인시험과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수수료를 부당하게 받은 경우	법 제23조의3제2항제 6호	효력정지 2개월